**DRIVE 동아리 회칙**

**제 1장 총칙**

**제 1조 [동아리 명칭]**

① 본 동아리의 명칭은 “DRIVE”로 한다.

**제 2조 [목적]**

① 본 동아리는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탁구를 통한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3조 [동아리 소재]**

① 본 동아리의 소재지는 숭실대학교 동아리연합회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.

**제 2장 임원진 및 집행부**

**제 1조 [임원진의 임기]**

① 임원진의 임기는 6개월으로 한다.

② 임원진은 재임이 가능하다.

**제 2조 [임원진 선출 방식]**

① 임원진의 선출은 전년도 임원진 추천 제도로 선출한다.

**제 3조 [임원진]**

① 본 동아리의 임원진은 회장, 부회장, 집행부로 구성된다.

② 회장과 부회장은 동아리 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.

**제 4조 [집행부]**

① 본 집행부는 총무부, 사무부, 홍보부로 구성된다.

② 총무부는 동아리 계좌를 관리하고 동아리 활동에 있어서 요구되는 전반적인 재무관리를 한다.

③ 사무부는 동아리에 요구되는 문서작업을 담당한다.

④ 홍보부는 동아리 홍보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.

**제 5조 [집행부 회의]**

① 본 동아리는 임원진의 주관으로 회의가 필요할 경우 회의를 진행한다.

**제 3장 회원**

**제 1조 [회원 자격 및 의무]**

① 본 동아리의 회원은 동아리 회칙을 따를 의무를 가진다.

② 본 동아리의 회원은 동아리 활동에 있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권리가 있다.

③ 본 동아리의 회원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.

④ 본 동아리의 회원은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시 임원진의 통제를 따를 의무를 가진다.

**제 2조 [회원의 가입]**

① 본 동아리의 회원가입은 집행부가 정한 규칙에 따른다.

**제 3조 [회원의 탈퇴]**

① 탈퇴를 희망하는 회원은 집행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탈퇴가 성립된다.

**제 4장 회의**

**제 1조 [정기 모임]**

① 본 동아리의 정기 모임은 임원진의 회의를 거쳐서 진행한다.

**제 2조 [총회]**

① 본 동아리의 총회는 임원진의 회의를 거쳐서 진행한다.

**제 5장 재정**

**제 1조 [수입]**

① 동아리의 수입은 회비로 정하며, 이는 본 동아리의 활동비로 사용된다.

**제 2조 [회비]**

① 본 동아리의 모든 회원은 학기마다 임원진이 지정하는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

② 본 동아리의 회비는 정기모임에 세번이상 참여하지 않았으며 회비 환불가능기간에 한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회비 환불가능기간은 학기의 절반인 1학기는 03.02~04.30, 2학기는 09.01~10.31으로 규정한다.

③ 환불금액은 회비에서 지원 받은 비용의 차액만큼 환불해준다.

**제 3조 [결산보고]**

① 회장은 총회에서 당 학기의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.

**제 6장 동아리 등록**

**제 1조 [등록]**

① 동아리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숭실대학교 학칙 및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따른다.

**제 7장 부칙**

**제 1조 [회칙 발효]**

① 각 개정안의 개정 회칙은 다음 개정일부터 시행한다.

초판 [2024.03.29]

**제 2조 [회칙 개정]**

① 본 동아리의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회원의 투표에 의해 개정될 수 있으며 출석 인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이어야 한다.